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종래에 ‘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’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‘지역경제협의회’, ‘소비자정책위원회’,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 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폐지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-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 물가안정 시책, 유통 산업간의 분쟁조정, 유통·물류시책,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공인

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‘지역경제협의회’, ‘소비자정책위원회’, ‘유통분쟁조정위원회’ 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왔으나,

-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·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법제처 2010. 2. 1. 회신 09-0395 해석례

-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(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),
-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·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,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),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함
- 따라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, 기능,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간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

참고

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능별 조정 내용

기능	조례정비 내용	근거법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경제활성화 주요시책 	<p>< 경제기업과 ></p> <p>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북지역경제협의회 구성 ※ 30명 이내 구성(위원장: 경제부지사) 	<p>「시도경제협의회규정」제9조 (지역경제협의회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비자권익 증진 지역물가안정 주요시책 지방공공요금 조정 	<p>< 경제기업과, 사회적경제과 ></p> <p>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북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(소비자권익증진 + 물가, 공공요금) ※ 15명 이내 구성(위원장: 경제부지사) 	<p>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 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통산업간 분쟁조정 	<p>< 사회적경제과 ></p> <p>「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」 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북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※ 11~15명 구성(위원장: 위원 중 호선) 	<p>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36조 (유통분쟁조정위원회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 	<p>< 사회적경제과 ></p> <p>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 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충북소상공인위원회 구성 ※ 9명 이내 구성(위원장: 위원 중 호선) 	<p>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8조 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등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 	<p>< 교통정책과 ></p> <p>법령을 근거로 위원회 운영 중</p>	<p>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0조 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※ 구성 방법 등이 시행령에 명시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	<p>< 경제기업과 ></p> <p>시군에 업무 위임으로 도에 위원회 별도 설치 불필요</p>	